



금산군의회  
GEUMSAN COUNTY COUNCIL

2026. 3. 18.(수)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  
**의안 검토보고서**

**검토안건**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주현

#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호
- 제 출 자 : 금산군수
- 제 출 일 : 2026. 3. 5.
- 회 부 일 : 2026. 3. 17.

## 2. 제안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상인회에게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인회로 하여금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투명한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 부과 사항 삭제(안 제23조제3항)
  - 보조금을 신청하는 상인회에게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부과 사항 삭제
- 법령 인용 표기 정비 및 법률명 개정 사항 반영(안 제23조제4항, 제37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예산조치 : 비용발생요인 없음
- 기 타
  -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 해당없음(기획예산과-1274)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1273)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3568)
  - 입법예고(2026. 1. 20.~ 2026. 2. 9.) : 제출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 표기 정정과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상인회의 보조금 신청시 보증보험증권 첨부 의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